

이라크의 商標制度

孫 海 雲
<辨理士>

① 出願對象

이라크에서 누구든지自己의 生產, 製造, 加工 또는 選擇에 관계되는商品으로서自己가現在販賣하고 있거나 앞으로販賣하려는 것과他商品을區別할目的으로 그商品에 관해商標를專用할權利를 갖는것을希望할 때는이라크商標 및 商業表示法의規定에 따라 그商標의登錄出願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다음各號의 1에掲記하는事項은商標로서登錄될 수 없다.

(1) 特別顯著한性質을 갖고있지 않는商標,商品의種類,品質,數量, 그리고生產場所의區別이나表示를하기위하여使用된商標 또는現行의이라크語로서이들事項을表示하는商標

(2) 公共秩序와美風良俗에違反하는商標, 表現 또는 圖案

(3) 이라크, 外國 또는 國際聯合이나 그機關의長, 紫章,勳章 및 記章과同一 또는類似한商標

(4) 專門的宗教的意義를 갖는記號와同一 또는類似한商標

(5) 赤十字 또는 제네마十字 및 赤星의記章과同一 또는類似한商標

(6) 書面으로 承諾을 받지 않은他人의名稱,稱號,肖像 또는 記章

(7) 公衆을欺瞞하거나 또는公衆에게商品의虛偽表示를眞實한 것처럼誤認시킬憂慮가 있는圖形, 文字 및 言語

(8) 公衆에게商品의出所및 그表示에 관계되는虛偽宣傳을 믿을憂慮가 있는商標, 그리고欺瞞的, 僞造的, 또는許偽的인商號를包含한商標

(9) 登錄出願人이適法的으로 갖지 않은名譽稱號의宣言 또는商標使用者가書面으로證據를갖고있지않은特別恩惠를特權의으로賦與했다는것을誤信할憂慮가 있는陳述을包含한宣言

(10)同一한商品에 관계되는他人商標에類似한商標, 다만誤認 또는混同을일으킬憂慮가있을때에限함

(11) 商標使用으로生產國 또는出所國에관하여混同을일으킬憂慮가 있는地理的名稱

② 登錄節次

商標의登錄出願은商標法에의한規則에서定하는樣式 및 條件에따라登錄官에게하게되며規則에서掲記하는商品類別에의하여하나에서둘以上의商品 또는둘以上의類에관하여登錄할수있다.

한편登錄官은둘以上의者가同一類에屬하는商品에관하여同一 또는類似한商標登錄을同時에出願할경우에는그競合하는出願人은누구나他者の利益을위하여自己의權利를拋棄한다는要旨의證明書 또는法院의確定判決을提出할때까지모든出願에관하여登錄할수있다.

또한登錄官은商標使用的樣態, 場所,其他의事項을記述, 定義,明確化하는등의相當한理由에根據하여必要하다고認定하는制限 또는修正을他의既登錄商標와의混同을防止하는데充分한方法으로出願人에게命令할수있다.

다음登錄官은出願의拒絕 또는條件을불어서認容할경우에는그決定의理由 및 그理由에關聯하는事實을開示한書面에다그要旨를出願人에通知한다.

그러나出願人이登錄官이命한制限에따라30日以内에再次出願하는것을懈怠하게되면出願을拋棄한

것으로 看做하게 된다.

이와같은 登錄官의 決定에 대해서 出願人은 法院에 不服申請을 할 수가 있고 이不服申請은 登錄官의 登錄決定通知日로부터 30日以内에 해야하는 것이다.

한편 登錄官이 出願認容을 하게 되면 그要旨의 公告를 公報에다 連續 3回에 걸쳐掲載한다.

③ 異議申請 및 登錄

이와같은 登錄公告에 대해 利害關係人은 前後의 公告掲載日로부터 90日以内에 書面으로 商標登錄에 관한異議申請을 할 수가 있다.

異議申請이 接受되면 登錄官은 商標出願人에게 異議申請의 書副本을 發送하고 通知를 받은 出願人은 30日以内에 答辯書를 提出해야하는데 이期間以内에 答辯書의 提出이 없는 경우에 역시 出願을 抛棄한 것으로 보게된다.

異議申請의 決定前에 登錄官은 當事者の一方 또는雙方을 審問할 수가 있고 이러한 節次를 거쳐 登錄出願을 認容또는 拒絕하는 決定을 하게 된다.

이때 出願認容의 경우에는 必要하다고 보는 制限을 命할 수도 있으며 異議에 理由없다는 認定이 되면 登錄查定을 하게 된다.

登錄은 出願日을 邊及해서 効力이 發生되며 登錄官은 商標登錄을 하는데 出願인이 懈怠하여 6個月以内에 그節次를 完了하지 않은 경우 期間內의 登錄을 書面으로 要求하고 그래도 節次를 밟지 않으면 出願의 抛棄を 處理한다.

④ 商標權의 移轉

商標權은 指定商品과 關聯이 있는 營業과 함께 移轉할 수는 있으나 擔保로 提供한다든가 押留할 수는 없다.

商標權의 移轉에 있어서는 別途의 合意가 없는 限營業과 함께 해야 하는데 營業이 商標와 分離하여 讓渡되는 경우라도 讓渡人은 別途의 合意가 없는 限商標登錄에 관계되는 商品의 製造및 去來를 繼續할 수가 있다.

한편 商標權者가 어떤 理由로 營業을 中止하고 그結果 들以上의 者에 그商標權을 移轉하게 되는 경우 이들 營業의 承繼人이 商標權의 分割所有를 希望할 때 登錄官은 現在 營業을 하고 있다는 要旨를 證明하는 者에게自己가相當하다고 認定하는 制限, 條件, 變更등을 불허서 移轉을 命할 수가 있다.

商標의 移轉, 擔保 및 押留는 그要旨의 公告 및 登錄後가 아니면 第3者에 對抗할 수가 없다.

⑤ 更新 및 取消

商標權의 存續期間은 15年이며 다만 이기간은 所定의 料金을 納入하여 期間満了의 年度末까지의 申請에 根據하여 15年씩 每年 更新할 수가 있다.

또한 商標權이 更新登錄料를 納入하지 않아 原簿에서 抹消되었다라도 그抹消日로부터 1年間은 他人에 의한 商標登錄出願을 위해서는 前商標權者的 名義로서 原簿에 登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登錄官이 그商標登錄의 抹消前 2年間에 그商標의 實際的 使用이 없거나 抹消된 商標의 從前使用에도 不拘하고 登錄出願의 目的이 되는 商標의 사용으로 誤認混同을 일으킬 憂慮가 없는 것에 滿足하는 경우는 여기에 限하지 않는다.

利害關係人은 商標登錄이 不適法하거나 商標權者가 그商標를 사용할 意圖가 없고 그商標가 登錄日로부터 2年間 사용하지 않았다는 理由로 登錄商標의 取消를 法院에 請求할 수가 있다.

이경우에 그商標의 不使用이 商標權者的 歸責事由가 아닌 特別한 事情 또는 法定理由가 있으면 取消되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商標權者以外의 者는 取消日로부터 적어도 1年을 經過할 때까지는 取消에 관계되는 登錄을 할 수가 없다.

商標의 再登錄 및 更新은 規則에 따라 公告하고 登錄官이나 利害關係人은 違法으로 登錄된 商標의 取消를 法院에 請求할 수가 있다.

⑥ 登錄原簿

特許廳이 原簿를 備置하고 登錄官이 이를 管理하며 그原簿에는 商標, 商標權者的 姓名, 住所, 居住地, 指定商品의 表示, 商標權에 관계되는 變更, 移轉, 讓渡 및 抛棄 事項등이 記載된다.

또한 이原簿는 公衆의 閲覽에 부쳐서 누구든지 所定의 料金만 支拂하면 原簿에 記載된 認定證本을 取得할 수가 있다.

移轉, 其他 適法한 原因으로 商標權을 取得한 者는 登錄官에게 自己의 名義로 商標登錄을 해 주도록 申請할 수가 있고 登錄官은 그者的 名義로 商標 및 商標權移轉의 原因을 原簿에 登錄한다. —14面에 계속—

⑨ 結論

以上에서 檢討한바를 綜合하여 보면

① SEARCH-FILE은 그 機關의 特性에 맞게 1次式 혹은 2次式을 選擇하여야하고

② SEARCH達成目標는 最少限 80%以上이 되어야 하겠으며

③ 審集資料數는 全部野를 COVER하려고 할때는 最少限 年間特許文獻의 1次公開分 約 37萬件以上을 審集할것이며 어떤 特定의 分野만을 審集하려고 할 때는 그 分野에 限하여 資料를 審集整理하면 되고

④ 審集資料範圍는 語言을 고려하여 美國特許, 日本特許를 優先시키고 나머지 歐州特許를 收集함이 좋을 것으로 思料된다.

⑤ 審集國家는 主로 美國과 日本을 優先하여 擇하고 여기에 歐州의 重要한 2個國程度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나머지 國家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남게 되나 世界的으로 認定이 되는 重要한 特許는 美國이나 日本 그리고 歐州의 重要國에도 出願하는 것이一般的인 傾向이므로 이를 重要한 國家만 審集하면 그의 大部分의 特許技術은 審集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以上의 諸條件이 決定되었으면 다음은 이 原則에 의하여 資料를 審集하고 이를 資料를 分類別로 整理만 하면 SEARCH-FILE이 完成되는 것이다. 여기서 分類를 어떤 分類을 擇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機關에서 使用에 便利한 分類를 정하여 이에 따라 分類를 하면 될 것이다. 國家에 따라 獨自의 分類가 있으며, 이를 世界的으로 統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國際特許分類(IPC)도 있으므로 여러가지를 參考하여 그 機關에 알맞은 分類를 挑하여 그 分類表에 따라 資料를 整備分類하면 될 것이다. (完)

—11面에서 계속—

또한 登錄官은 原簿에 記載되어 있는 錯誤, 또는 漏落이나 更正申請이 있으면 檢討하여 適當하다고 認定할 때는 原符記載를 更正할 수가 있고 그리고 商標登錄, 登錄商標의 讓渡 또는 移轉에 관한 詐偽事實이 있으면 更正命令을 要求하기 위한 그 事件을 法院에 移送한다.

한편 原簿에 記載된 制限 또는 條件을 留保하여 商標權者로서의 適法한 登錄은 登錄에 관계되는 商品 또는 그 商品에 關連하여 當該商標을 專用하는 權利를 賦與하고 있다.

⑦ 商業表示

이라크에서의 特色있는 商標制度의 하나가 商業表示制度이며 다음에 揭記한 事項에 直接 또는 間接으로 關聯하는 表示 또는 그 細目을 商業表示로 한다.

(1) 商品의 性質, 數量, 尺度, 重量 및 容積

(2) 製造國

(3) 製造 또는 生產方法

(4) 構成物의 要素

(5) 製造者 또는 生產者的 姓名, 名稱 및 表示

(6) 特許權, 商工業上の 獨占權 또는 特權

(7) 商品의 周知名稱 또는 形態

商業表示는 商品, 住所, 營業所 또는 倉庫, 包裝, 送狀, 其他 廣告나 販賣 및 陳列用의 在庫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事實과 一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販賣者的 姓名, 名稱, 住所는 輸入品에 關해

그 製造地(原產地)를 明確한 字體로 된 表示를添附하지 않으면 그 物品에 表示할수가 없다.

또한 어떤 商品의 製造地 또는 生產地에 住所나 居住地를 갖고 있는 者로서 다른 地域으로부터 輸入하는 類似商品의 去來를 하는 者는 그 商品의 出所에 관하여 公衆을 欺瞞할 수 있는 方法으로 自己商標를 그 類似輸入品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⑧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200치 낮아 200치 낮아以下の 罰金에 處하고 그 刑은 情狀에 의하여 이것을 併科할 수 있게 된다.

(1) 商標表示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商標法上에 登錄된 商標를 公衆에게 欺瞞하는 方法으로 偽造 또는 模造한 者와 이와같은 商標를 사용한 者

(3) 故意의으로 自己製品에 他人의 商標를 付着한 者

(4) 偽造 또는 模造商標를 不法으로 商品에 附着한 것을 알면서도 그 商品을 故意로 販賣하거나 販賣토록 한 者 등이다.

한편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100치 낮아 100치 낮아以下の 罰金에 處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1) 不登錄事由의 商標를 使用한 者

(2) 登錄商標를 誤認하도록 事實과 다르게 自己商標나 去來上의 廣告등에 사용한 者 등이다.